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3. 8.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21135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2021. 11. 25.	제397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2. 5. 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114771		송재호의원	2022. 2. 14.	
2115921		이정문의원	2022. 6. 14.	제400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2. 9.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117424		박재호의원	2022. 9. 20.	제400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22. 11.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117880		윤한홍의원	2022. 10. 2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400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118110		김종민의원	2022. 11. 4.	(2022. 11. 22.) 바로 회부
2118692		강민국의원	2022. 12. 6	제403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3. 2.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 4. 25.)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05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3. 4. 27.)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고,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특례대상으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 기준 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안 제28조제3항제1호).

#### 나. 선불충전금의 보호(안 제25조의2,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호 신설)

- 1)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4호, 제36조의2제3호 및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2)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5호·제6호 신설).

라.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안 제35조의2,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49조제5항제6호의2·제9호의2 신설)

1)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이를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2)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나 용자를 금지함.

#### 4.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업계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기준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을 마련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표”를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를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  
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  
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

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2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제35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용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항에 제6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구매하도록 한 재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5.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6.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9.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5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3. (생략)</p> <p>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u>증표</u>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u>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p> <p><u>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u></p> <p><u>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u></p>	<p>제2조(정의)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 -----저장되어 발행된 <u>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u>----- -----<u>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u>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중(「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15. ~ 19. (생략)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1.·22. (생략)

15. ~ 19. (현행과 같음)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22. (현행과 같음)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생략)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

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로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로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로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 ② (생략)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생략)

2. (생략)

④ · ⑤ (생략)

<신설>

③ -----  
-----  
-----  
-----  
-----.

1. -----  
-----  
-----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2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  
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  
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  
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용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



<신 설>

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49조(벌칙) ① ~ ④ (생략)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  
-----  
-----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제3항,-----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설>

7.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⑥ ~ ⑧ (생략)

⑤ -----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 9. (현행과 같음)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51조(과태료) ① -----

-----제10

호-----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6.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3.4.</u>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u>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 하지 아니한 자</u></p> <p>8. <u>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 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를 한 자</u></p> <p>9. <u>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자</u></p> <p>10.·11.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